

#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68호
----------	--------

제출년월일 2023. 3. .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2022년 9월 조직개편으로 안전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을 현 안전담당관 체제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사항(위원 명칭) 일부 변경(안 제3조)
- 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사항(간사) 변경(안 제3조)
- 다. 실무조정위원회 구성사항(위원장) 변경(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생략(「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 2)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 나) 경기도 : 사회재난과

##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 14.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제7조제2항 본문 중 “교통건설국장”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안전담당관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안전담당관 김광식
	팀장 직위·성명	사회재난팀장 이순묵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시설서기보 강은지(☎291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p> <p>1. ~ 13. (생략)</p> <p>14.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p> <p>15. (생략)</p> <p>② (생략)</p> <p>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p> <p>제7조 (실무조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p> <p>① (생략)</p> <p>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u>교통건설국장</u>이 되고,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실무조정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위원만으로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 ----- ----- -----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u>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u></p> <p>1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부서의 장</u>-----.</p> <p>제7조 (실무조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u>----- ----- ----- -----.</p>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삭제
-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김포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법령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6.3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6.30>

1. 김포시의회 의장 <개정 2017.6.30>
2. 부시장
3. 김포경찰서장
4. 김포소방서장
5.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9.30)
6. 해병대제2사단 군수참모
7. 육군제3765부대장
8. 김포시 4급 이상 공무원
9. 한국전력공사 김포지사장 (개정 2015.9.30)
10.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천김포지사장 (개정 2015.9.30)
11.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장 (개정 2015.9.30)
12. KT 김포지사장 (개정 2015.9.30)
13. 관내 의료기관의 장
14.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정 2015.9.30, 2019.4.17)
1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7.6.30>

②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의 직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6.30>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7.6.30>

####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2017.6.30 조제목 개정>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30>

②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질병,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7.6.3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시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조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실무조정위원

장은 심의에 필요한 위원만으로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시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축제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66조의11제1항에 의한 지역축제

2. 「공연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서 [제7조제3항제4호에서 이동 2015.9.3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또는 행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부서·기관·단체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다. [제7조제3항제5호에서 이동 2015.9.30]

5. [제7조제3항제4호로 이동 2015.9.30]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 밖에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실무조정위원을 포함한다)의 자문을 받거나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및 경비)**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 또는 실무조정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실무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

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